

# 건축사법시행령개정령

◎ 대통령령제9,183호

1978년 10월 6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축사법시행령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제 1 조(목적) 이 영은 건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공사감리) 법 제 2 조 제 4 호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한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법시행령 제 2 조 제 3 항에 규정한 사항
2. 건축주와 시공자와의 협의 조정에 관한 사항

제 3 조(표준설계도서등) ①법 제 4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는 건설부장관이 작성한 설계도서 중앙판서의 장이 작성하거나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나 대한주택공사의 장이 작성한 것으로서 동일한 설계에 의하여 10개동 이상을 설계하게 되어 2종으로 설계를 할 필요가 없다고 전설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물의 설계도서를 말한다. 다만, 연면적이 85평방미터를 넘는 주택(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세대당 전용면적이 85평방미터를 넘는것)의 설계도서를 제외한다.

②법 제 4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공법에 대한 설계도서는 건축법에 규범한 구조이외의 구조의 건축물 또는 건축물의 일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전설부장관이 새로운 공법이라고 인정하는 설계도서를 말한다.

③전설부장관은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설계도서나 특수공법에 대한 설계도서를 인정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설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설부장관이 작성한 설계도서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④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전설부장관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전설부령이 정하는 관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전설부장관은 제 1 항 또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거나 인정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당해 설계도서를 폐지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⑥제 1 항 및 제 2 항의 표준설계도서와 특수공법에 대한 설계도서의 관리·운영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설부령으로 정한다.

제 4 조(건축사면허신청 등) ①법 제 7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외국인을 포함한다)는 전설부령이 정하는 건축사자격시험응시원서 및 면허신청서를 전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 1 항의 건축사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전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초본 1부
2. 신원증명서 1부
3. 학력증명서 1부
4. 경력증명서 1부

제 5 조(건축사면허 등) ① 건설부장관은 시장에 합격한 자에게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사면허를 하여야 한다.

② 건설부장관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면허를 할 때에는 건설부에 비치하는 건축사명부에 필요 한 사항을 기재하고, 면허증 및 면허수첩을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건설부장관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면허를 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 하여야 한다.

④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명부·면허증 및 면허수첩의 서식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 6 조(신상변동신고 등) ① 건축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법 제 8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날로부터 15일내에 건설부령이 정하는 신상변동신고서에 면허증 및 면허수첩을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본 적

2. 주 소

3. 성 명

4. 생년월일

5. 근무처

② 건축사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의 당해 건축사의 사망일로부터 30일내에 면허증 및 면허수첩을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7 조(시험방법 등) ① 시험은 제 1 차시험 및 제 2 차 시험으로 구분하고, 제 1 차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제 2 차 시험은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으로 이를 실시하며, 제 1 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제 2 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면접시험은 응시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제 8 조(시험과목 등) ① 시험과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 1 차시험과목(객관식을 원칙으로 한다)

가. 건축계획

나. 건축구조

다. 건축시공

라. 건축법규

2. 제 2 차시험과목(주관식을 원칙으로 한다)

가. 건축설계

나. 건축계획

다. 건축구조

라. 건축시공

마. 건축법규

② 시험과목별 출제범위는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 9 조(시험과목의 면제) ① 법 제 7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건축사면허를 받은 자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건축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과목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외국에서 건축사면허를 받은자(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건설부장관이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 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 1 차시험을 면제하고, 제 2 차시험과목중 건축법규 이외의 과목을 면제한다. 이 경우에 제 2 차시험은 필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으로 하되,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설계과목을 과할 수 있다.

2. 국가기술자격시에 의한 건축시공분야의 기술사 면허를 받은자에 대하여는 건축시공과목을 면제한다.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구조분야의 기술사면허를 받은자에 대하여는 건축구조과목을 면제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과목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 4 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자격시험응시원서에 그 뜻을 기재하고, 관계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0 조(합격기준) 시험의 합격기준은 매과목 100점(건축설계과목은 2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 할이 상, 응시과목 총점의 평균성적 6 할이 상의 득점을 합격으로 한다.

제11조(시험시행공고)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 일시·시험장소 기타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그 실시 30일전에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경력의 인정기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은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 하여 1등급은 전기간, 2등급은 그 80퍼센트, 3등급은 그 60퍼센트를 각각 인정한다.

제13조(건축사위원회) 시험과 건축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부에 건축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구성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건설부차관이 된다.

③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건축에 관한 학식과 경험에 풍부한 자 중에서 건설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차기시험시행 공고일의 전일까지로 한다.

제1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시험의 출제 및 채점에 관한 사항

2. 시험의 합격자 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학력 및 경력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건축사의 면허취소,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 및 그 폐쇄명령의 기준에 관한 사항

5. 기타 건설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1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건설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9조(수당과 여비)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설계도서의 신고 등) ①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의 신고는 건축허가신청전에 건설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정면도·평면도·추정공사금액 및 설계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 건축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설계도서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하며, 당해 설계도서가 건축물의 미관상 또는 기능상 지장이 있게 설계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건축사는 제1항의 설계도서 기타서류에 허위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설계도서를 합동건축사무소에서 작성한 설계도서에 대하여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2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등록신청) 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 또는 합동으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신원증명서

3. 면허증사본
4. 건축보조사 및 직원의 명단
5. 시설보유증명서
6. 사무소안내도
7. 등기부등본 및 정판(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제23조(등록기준) ①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3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보조사와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사무소
2. 전화
3. 제도판

- ② 제 1 항의 건축보조사 및 시설의 기준은 등록을 하고자 하는 건축사사무소가 소재하는 시·군의 인구규모와 단독건축사사무소 또는 합동건축사사무소(이하 “합동사무소”라 한다) 별로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 ③ 합동사무소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종전의 규정에 의한 2급건축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2인 이상이어야 하며, 법인인 합동사무소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하여 임원의 과반수가 건축사이어야 한다.
- ④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플랜트 엔지니어링용역업체와 종합건설기술 용역업체에 소속된 건축사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특수공장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자가 행하는 것으로 본다.
- ⑤ 법 제23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은 건축사·건축보조·사무소 소재지·전화번호 및 제도판 수로 한다.

제24조(등록증의 교부등) ① 건설부장관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거부의 사유가 없는 한 건축사사무소 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본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의 건축사사무소 등록부와 등록증의 서식 및 등록증의 재교부에 관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건축사사무소의 업무범위) ① 법 제23조의 2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합동사무소를 등록한 자가 아니면 행할 수 없는 건축사업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설계와 공사감리업무로 한다.

1. 단독주택·다만, 인구 20만 미만의 시·군의 행정구역으로서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내의 단독주택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제 2 조 제 3 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물로서 연면적 15,00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
3. 20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0,00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

② 법 제23조의 2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합동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행하게 할 수 있는 조사 및 겸사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지에 적합한 설계도서인가의 여부
2. 설계도서의 관계법령에의 저촉여부
3. 건축공사가 설계도서에 따른 시공인가의 여부

제26조(합동사무소 등록인의 책임) ① 합동사무소에 소속한 건축사는 당해 합동사무소에 소속한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연명으로 확인·날인하여야 한다.

1. 제25조 제 1 항 제 1 호의 건축물의 설계도서에 대하여는 동조 제 2 항 각호의 사항

② 제25조 제 1 항 제 2 호 및 제 3 호의 건축물의 설계도서에 대하여는 동조 제 2 항 제 1 호 및 제 2 호의 사항

③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날인하여야 할 건축사의 수와 확인서의 서식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면허증 등의 게시와 장부의 비치)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이하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라 한다)는 건축사사무소내에 면허증과 등록증을 게시하여야 하며, 건설부령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8조(등록사항 등의 변경신고) ① 법 제27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또는 휴업·폐업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내에 건설부장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 건축사사무소 개설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합동사무소의 개설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소속 건축사)이 당해 개설자의 사망일로부터 30일내에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9조(건축사사무소 개설자에 대한 교육) ① 건설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건설부장관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실시를 협회 기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0조(등록최소 또는 폐쇄명령의 기준) 법 제28조 제 1 항 제 6 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최소 또는 폐쇄명령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최소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28조 제 1 항 제 6 호 또는 제 7 호에 해당하는 경우

나. 법 제28조 제 1 항 제 8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건축사사무소 개설자 또는 건축보조사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

다. 법 제28조 제 1 항 제 9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판상 또는 기능상 지장이 있게 설계되었다고 건설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라. 법 제28조 제 1 항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건축법 제39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 또는 공사감리한 경우

2. 건축사사무소의 폐쇄명령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 1 호 가목 내지 라목에 규정한 사유 이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31조(보수기준의 공고) 건설부장관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의 업무에 관한 보수의 기준을 인가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기준의 변경에 관한 인가를 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2조(정관의 기재사항)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                       |                  |
|-----------------------|------------------|
| 1. 목적                 | 7. 회비에 관한 사항     |
| 2. 명칭                 | 8. 회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 3. 사업                 | 9. 자산에 관한 사항     |
| 4. 사무소의 소재지           | 10. 임원에 관한 사항    |
| 5. 회원의 가입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11. 회계에 관한 사항    |
| 6.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                  |

제33조(사업) 협회는 법 제31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업을 행할 수 있다.

1. 건축사의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2. 건축공사의 시공기술의 향상을 위한 지도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교양과 복리증진 및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
4.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항

제34조(보고)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회원을 징계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권한의 위임) ① 건설부장관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 2 조 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보고 조사 신고수리에 관한 권한
2. 제 6 조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수리에 관한 권한
3.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 수리에 관한 권한
4. 제28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수리에 관한 권한

② 도지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면허증 등의 재교부) 법률 제3,074 호 건축사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 면허증 및 면허수첩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영 시행일로부터 60일내에 도지사를 거쳐 건설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면허증 등의 신청)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면허증 및 면허수첩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 영은 시행일로부터 30일내에 제 4 조 제 2 항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를 거쳐 건설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④ (건축사사무소 등록증의 재교부) 법률 제3,074 호 건축사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 등록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신청서에 제 23조 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등록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건설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⑤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등록을 한 건축사사무소는 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의 재교부를 받을 때까지 이 영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로 본다.

## 자연 보호 현장

인간은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의 혜택 속에서 살고 자연으로 돌아간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 속의 온갖 것들이 우리 모두의 삶의 자원이다. 자연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의 원천으로서 오묘한 법칙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이 땅을 금수강산으로 가꾸며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향기 높은 민족 문화를 창조하여 왔다.

그러나 산업 문명의 발달과 인구의 팽창에 따른 공기의 오염, 물의 오탁, 녹지의 황폐화 인간의 무분별한 훼손 등으로 자연의 평형이 상실되어 생활 환경이 악화됨으로써 인간과 모든 생물의 생존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 모두가 자연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여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며, 모든 공해 요인을 배제함으로써 자연의 질서와 조화를 회복 유지하는데 정성을 다하여야 한다. 이에 우리는 이 땅에 보다 더 아름답고 쓸모 있는 낙원으로 만들어 길이 후손에게 물려주고자 온 국민의 뜻을 모아 자연보호현장을 제정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실한 실천을 다짐한다.

1.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일은 국가나 공공 단체를 바롯한 모든 국민의 의무다.
2.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문화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자연자원은 인류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3. 자연보호는 가정, 학교, 사회의 각 분야에서 교육을 통하여 체질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개발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신중히 추진되어야 하며, 자연의 보전이 우선되어야 한다.
5. 온갖 오물과 폐기물과 약물의 지나친 사용으로 인한 자연 오염과 파괴는 방지되어야 한다.
6. 오손되고 파괴된 자연은 즉시 복원하여야 한다.
7. 국민 각자가 생활 주변부터 깨끗이 하고 전 국토를 푸르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야 한다.

1978년 10월